

**□ 주요 내용**

가.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대상 영업자를 정함(안 제2조).

- (1) 영업자 및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제품 생산 환경이 다르므로 영업자별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기준을 분류할 필요가 있음.
- (2) 지정 대상 영업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·가공·수입업자,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업자 및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위탁급식 영업자로 정함.
- (3) 영업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을 차별화 적용할 수 있음.

나.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을 마련함(안 제3조).

- (1)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.
- (2) 지정 기준은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계획,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·영양 관리,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 활동, 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및 개선 실적 등으로 정함.
- (3) 지정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정 행위에 대한 일관성, 투명성,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.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**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제정고시**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27호, 2009. 5. 8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·가공·유통·판매를 권장하고자 「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」을 제정고시 하였습니다.

**□ 주요 내용**

가.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

마련함(안 제3조).

- (1) 어린이 기호식품에 품질인증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

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- (2) 품질인증기준을 안전 기준, 영양 기준,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으로 정함.
- (3) 품질인증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품질인증 행위에 대한 일관성,

투명성,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 될 것으로 예상됨.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28호, 2009. 5. 8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·평가하고자 「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」을 제정고시 하였습니다.

#### □ 주요 내용

가.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항목을 정함(안 제2조).

- (1)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(이하 “안전지수”)를 합리적·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- (2) 안전지수의 조사항목을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,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, 어린이 식생활 인지·실천 분야로 구분하여 규정함.
- (3)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성있는 안전지수 산출이 기대됨.

나.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방법 등을 마련함(안 제3조).

- (1) 안전지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방법 마련이 필요함.
- (2)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통계자료의 수집, 서류검토, 설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수를 조사함.
- (3) 안전지수 조사 행위의 일관성 확보가 기대됨.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